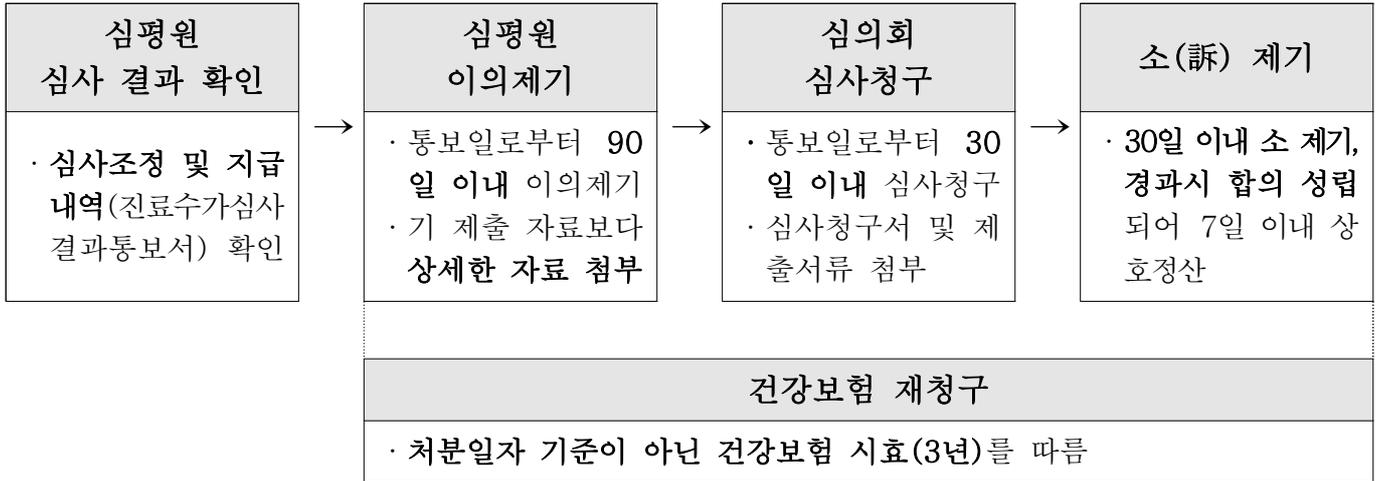


자동차보험 청구 이의제기 절차

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

□ 이의제기 절차



<자동차보험 이의제기 절차>

1.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심평원) 심사 결과 확인

- 심사조정 및 지급내역 확인

2.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심평원) 이의제기*

- 심평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심평원에 이의제기
- 서면 · 요양기관업무포털(WEB) · 진료비청구포털(이의제기프로그램)을 통해 이의제기 신청

*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4(이의제기 등) 및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28조(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)

3.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(심의회) 심사청구*

- 심평원 이의제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이의제기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회에 심사청구
- 심사청구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 심사접수시스템 · 우편 · 직접 방문하여 제출

- 접수사실 통보를 받아 심사 피청구인이 된 경우, 심의회로부터 접수사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및 증빙서류 제출**
- 답변서를 온라인 심사접수시스템 · 우편 · 직접 방문하여 제출

- 심사청구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소(訴)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당사자간에 결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성립 간주하고, 그날로부터 7일 이내 상호 정산

*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19조(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) 및 제21조(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),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31조(심사청구)

**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33조(답변서 등)

□ 건강보험 재청구

- 심평원 및 심의회 심사 결과,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수가의 해당 상병과 자동차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인정된 경우 건강보험으로 재청구 가능*하며, 이때 청구소멸시효는 처분일자가 아닌 건강보험 시효(3년)**를 따름

*진료수가 내역 중 일부가 심사 조정된 청구 건은 건강보험으로 재청구 불가능

**외래의 경우에 진료일 다음달 1일부터 3년, 입원의 경우에는 퇴원일 다음주부터 3년으로 적용